

##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6. 6. .  
제출자 : 이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-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 대한의 예산절감을 기하고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범원제도 개선을 위한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방범원의 경찰서, 파출소에 파견 근무제 폐지(안 제3조).
- 나. “방범원”의 직명을 “지도원”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연령은 “53”세에서 “58”세로 연장함(안 제4조).
- 다.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함.

## 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이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근무상한연령)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은 58세로 한다. 다만,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계  
직증인자를 임용함에 그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직증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 
본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방법원의 파견)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  <u>공무원중 방법원을 경찰서, 파출소에 파견근</u>  <u>무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(삭 제)</p>
<p>제4조(근무상한연령) ①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      한연령은 다음과 같다.      1. 방법원의 경년은 53세까지로 한다.</p>	<p>제4조(근무상한연령) <u>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은</u>  <u>58세로 한다.</u> 다만,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      시 재직증인자를 임용할에 그친다.</p>